

## 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

제정	1990. 6. 25	조례 제 607호
개정	1996. 5. 20	조례 제 929호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4. 8. 22	조례 제2009호(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8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96. 5. 20, 2008. 6. 16, 2014. 8. 22>

제2조(사업 및 기준) 「지방공기업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규모가 별표에 제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. <개정 96. 5. 20, 2008. 6. 16, 2014. 8. 22>

제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5. 2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22 조례 제2009호,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8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8. 7. 31>

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(제2조 관련)

사 업 명	사 업 규 모
수 도 사 업	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
공 업 용 수 도 사 업	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
궤 도 사 업	보유차량 50량 이상
자 동 차 운 송 사 업	보유차량 30대 이상
지 방 도 로 사 업	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·교량 3개소 이상
하 수 도 사 업	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
주 택 사 업	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
토 지 개 발 사 업	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